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투자정책서 -

2021. 5.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개 요 ····· 1
1. 지침의 개요 ····· 1
2. 지침의 목적 ····· 1
3. 기금의 개요 ····· 1

Ⅱ. 기금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2

Ⅲ.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 2
1. 기금운용 목적 ····· 2
2. 기금운용 원칙 ····· 2

Ⅳ. 기금운용 관련 자산운용체계 ····· 3
1. 의사결정 체계 ····· 3
2. 운용 관련 조직과 역할 ····· 4

Ⅴ. 자산배분정책 ····· 7
1. 목표수익률 ····· 7
2. 허용위험한도 ····· 8
3. 자금수지분석 ····· 9
4. 투자가능 자산군 ····· 11
5. 중장기 자산배분 ····· 11
6. 연간 자산배분 ····· 12
7. 기준수익률 ····· 13

Ⅵ. 위험관리 ····· 14
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 14
2.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 15

Ⅶ. 성과평가 및 보상 ····· 16
1. 성과평가의 원칙 ····· 16
2. 성과평가의 주기 및 결과보고 ····· 16
3. 성과평가의 기준 ····· 16
4. 보상정책 ····· 17
5. 성과평가 조직 및 보고체계 ····· 17

Ⅷ.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 18
1. 내부운용 정책 ····· 18
2. 외부운용 정책 ····· 18

Ⅸ. 의결권 행사 ····· 19
1. 의결권 행사원칙 ····· 19
2. 의결권 행사방법 ····· 19

Ⅹ.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 20

Ⅺ. 보고, 공시 및 감사 ····· 21

표 목 차

표 1. 기간별 운용자금의 목표수익률 ····· 8
표 2. 기간별 운용자금의 허용위험한도 ····· 9
표 3.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 ····· 10
표 4.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에 따른 투자가능 상품군 ····· 11
표 5. 중장기('21 ~ '25년) 자산배분 ····· 12
표 6. '21년도 연간 자산배분 ····· 13
표 7. 자산군별 기준수익률 ····· 13
표 8. 자산별 기준수익률 ····· 17

Ⅰ. 개 요

1. 지침의 개요

(1)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금위탁관리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작성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지침은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에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2. 지침의 목적

(1) 이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에 적합한 운용 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과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2) 이 지침은 운용목표, 투자정책, 윤리강령 및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 관리자, 위탁투자 관계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3. 기금의 개요

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과학적, 체계적,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7조(권한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징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 2020년 말 여유자금 규모는 30,808억원으로 단기자금에 3,585억원, 중장기자금에 27,223억원이 운용 중에 있다.

Ⅱ. 기금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1)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령 및 국가재정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2)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상기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 운용·관리규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3)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 절차와 세부 항목에 관한 사항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산운용기준(이하 “자산운용기준” 이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 이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성과평가관리기준(이하 “성과평가관리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다.

Ⅲ.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1. 기금운용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금운용 원칙

기금의 자산운용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며, 투자기간의 확대 및 투자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한 수익성 추구도 동시에 고려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허용위험한도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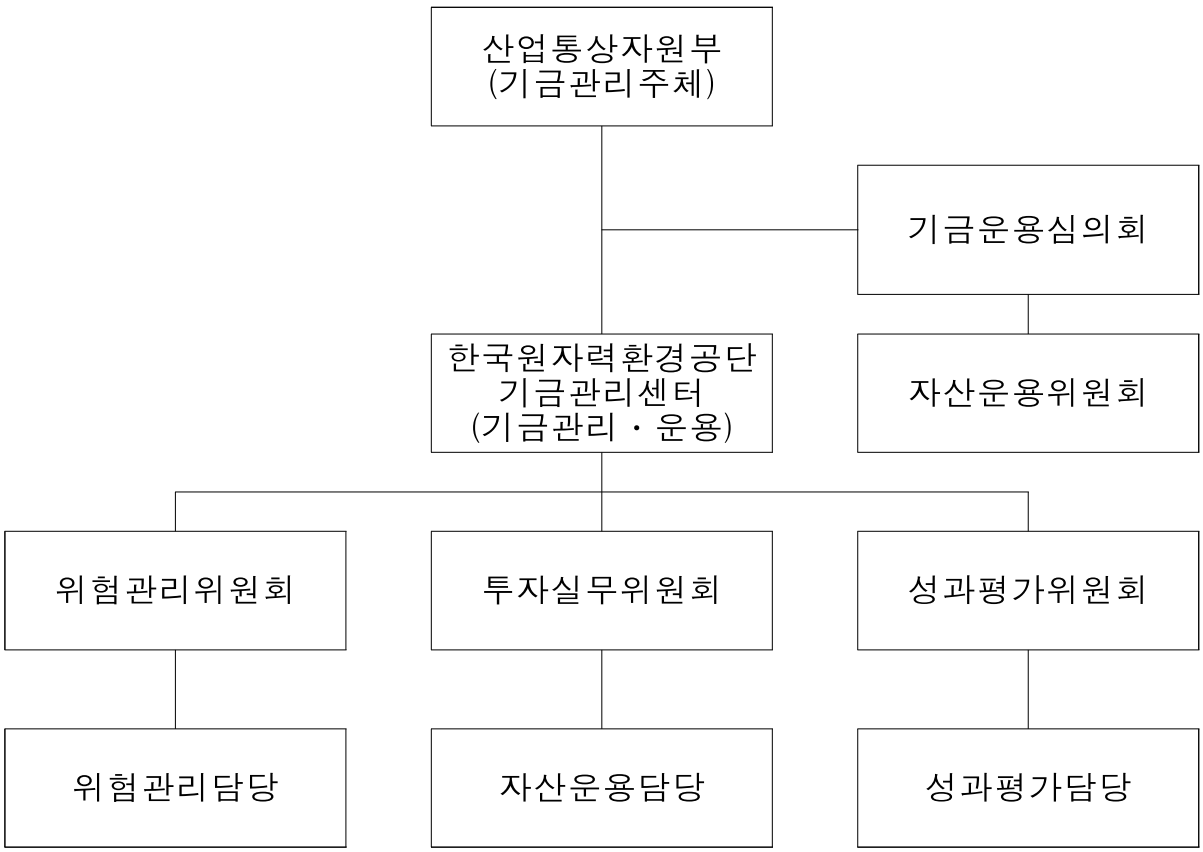
(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3)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Ⅳ. 기금운용 관련 자산운용체계

1. 의사결정 체계

기금의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운용 관련 조직과 역할

(1)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ㅇ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립
- ㅇ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ㅇ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ㅇ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기금운용심의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명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ㅇ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ㅇ 전략적 자산배분 및 변경
- ㅇ 연간(분기별) 자산배분 및 변경
- ㅇ 목표수익률과 위험허용한도 설정
- ㅇ 재간접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지위해제
- ㅇ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금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기금관리 주체의 공무원, 수탁기관의 임직원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임·위촉하는 자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구성은 국가재정법 제76조 제4항에 따른다.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ㅇ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실행
- ㅇ 기금운용성과 보고

(나) 감사부서
- ㅇ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감시 및 보고
- ㅇ 연간 자산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금관리센터

(가) 자산운용담당
- ㅇ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실행
- ㅇ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및 투자

(나) 위험관리담당
- ㅇ 운용 중인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다) 성과평가담당
- ㅇ 운용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5)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ㅇ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ㅇ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ㅇ 허용위험한도 관리 현황
- ㅇ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기금관리센터장 및 현직 위촉위원이 추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투자실무위원회

투자실무위원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의 심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ㅇ 금융기관과 위탁운용사 상품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ㅇ 외부위탁 운용기관 자금배분에 관한 사항
- ㅇ 전술적 자산배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ㅇ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금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관리센터장 및 현직 위촉위원이 추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 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과평가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ㅇ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ㅇ 운용자산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ㅇ 기타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기금관리센터장 및 현직 위촉위원이 추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8) 운영실무협의회

운영실무협의회는 재간접위탁운용 체계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산운용기준에서 정한다.

Ⅴ. 자산배분정책

1. 목표수익률

기금은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의 하나로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요구수익률”로 정의한다.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은 필요 재원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전체 자금의 목표수익률은 국고채 20년물 과거 3년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금융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표 1] 기간별 운용자금의 목표수익률

구 분		목표수익률
단기 자금	현금성	0.60%[1]
	유동성	0.68%[2]
중장기 자금		3.06%[3]
전체 자금		2.98% = Max [국고채 20년물 과거 3년 평균 수익률 ('19.12월 기준, 2.20%)[4], 실질가치요구수익률(1.44%)[5]] + 조정치(0.78%)[6]

1) 유형 평균 MMF수익률(0.60%, 최근 3개월, '20.12월 기준) + 기준금리 변동 전망치(0%)
2) CD 91일물 수익률(0.68%, 최근 6개월, '20.12월 기준) + 기준금리 변동 전망치(0%)
* 기준금리 변동 평균전망치는 '20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된 기관별 기준금리 전망치의 평균을 준용
3) (전체목표수익률-단기목표수익률×단기자금 비중) / 중장기자금 비중
4)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시 적용되는 명목 할인율 (비용산정위원회, '19.12월)
5) 무위험이자율(최근 5년 통안채 1년물 평균실질수익률 0.35%) + 소비자물가상승률 (최근 5년 연평균상승률, 1.09%)
6) ∑(자산별 위험프리미엄 × 전년도 중기 목표비중)
* 국내주식 위험 프리미엄 (3.19%) = (국내주식자산 기대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
국내채권 위험 프리미엄 (0.02%) = (국내채권자산 기대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
해외주식 위험 프리미엄 (4.13%) = (해외주식자산 기대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
해외채권 위험 프리미엄 (0.73%) = (해외채권자산 기대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
대체투자 위험 프리미엄 (1.36%) = (대체투자지수 기대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
**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은 중기('21~'25년) 기대수익률, 무위험수익률은 통안채 1년물 금리 과거 10년 평균값('20.12월 기준)

2. 허용위험한도

기금은 허용위험한도의 개념을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 정도"로 정의한다.

한편, 기금의 중장기 자금에 대한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 ≤ 10%"를 충족하는 자산배분 대안을 선택한다. 즉,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10% 이하로 통제하는 자산배분안을 선택한다. 또한 기금의 전체 자금에 대한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 ≤ 10%"를 충족하는 자산배분 대안을 선택한다.

[표 2] 기간별 운용자금의 허용위험한도

구분	허용위험한도
단기 자금	“Shortfall Risk ≤ 1%”를 충족하는 자산배분 대안을 선택 (즉,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1% 이하로 통제하는 자산배분안을 선택)
중장기 자금	“Shortfall Risk ≤ 10%”를 충족하는 자산배분 대안을 선택 (즉,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10% 이하로 통제하는 자산배분안을 선택)

3. 자금수지 분석

(1) 의의

자금수지분석은 자금의 유·출입 내역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기금의 적정 단기자금규모 및 중장기운용 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금수지분석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ㅇ 자금수지분석의 목적은 단기자금(현금성 및 유동성 자금)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 ㅇ 자금수지분석을 통한 적정 단기 및 중장기 운용자금 규모의 추정은 기금운용의 기본 목표인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ㅇ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한 후에 전체 운용대상 자금 중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하고 전체 운용대상 자금 중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제외한 금액을 중장기자금 규모로 명시하도록 한다.

(2) 자금수지항목의 분류

자금의 현금흐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한다. 수입항목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등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회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항목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3) 운용자금의 분류

운용자금은 아래와 같이 자금 성격에 따라 현금성자금,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으로 분류한다.

[표 3]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

구 분		내 용
단기자금	현금성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
	유동성	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
중장기 자금		단기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

(4) 적정 단기자금 규모 산출

적정 단기자금이란 CFaR(Cashflow at Risk) 등의 방법론으로 추정한 적정 유동성 자금과 당해연도 월별자금수지를 분석하여 순지출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사업성 대기자금으로 한다. 적정 단기자금은 다음 순서로 추정한다.

(가) 과거 자금수지 분석 및 미래 자금수지 예측
- ㅇ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의 과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자금의 유입과 지출의 규모, 시기, 추세 등을 분석하여 자금을 특성을 파악
- ㅇ 자금수지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대기자금 규모를 산정

(나) 적정 유동성 자금 규모 추정
- ㅇ 통계적 방법: 과거 월별 수입/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계획 대비 실제 순지출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 ㅇ 비통계적 방법: 정책적 결정 항목을 감안
- ㅇ 과거 순지출 내역에 근거하여 95% 목표수준으로 적정 유동성 자금 규모를 추정

(다) 적정 단기자금 규모 산정
- ㅇ 추정된 사업성 대기자금과 적정 유동성 자금을 합하여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정

(5) 적정 단기자금 규모

자금수지분석에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의 월간자료를 사용하였다. 적정 단기자금 추정방법론에 따라 기금이 설정한 목표수준인 95%의 확률로 순지출오차를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의 2021년도 연간 단기자금 규모는 907억원으로 예상된다.

4. 투자가능 자산군

(1)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인 현금성자금(3개월 미만)과 유동성자금(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MMF, MMDA, CD, CP, 정기예금, RP 및 연기금투자풀 혼합형상품(단기매칭형)에 예치한다.

(2)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은 CD, 정기예금, 주식형펀드(국내, 해외), 채권형펀드(국내, 해외), 혼합형 상품, 대체투자 상품에 예치한다.

[표 4]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에 따른 투자가능 상품군

구분		투자기간	투자대상상품
단기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확정형 : MMDA, CD, CP, 정기예금, RP 실적형 : MMF, 연기금투자풀 혼합형 상품(단기매칭형)
	유동성	3개월 ~ 1년 미만	
중장기자금		1년 이상	확정형 : CD, 정기예금 실적형 : 주식형 펀드(국내, 해외), 채권형 펀드(국내, 해외), 혼합형 상품 대체투자 상품

* 채권형 펀드의 경우 국채 및 AA-급이상 회사채를 투자자산으로 하는 펀드로 제한

5. 중장기 자산배분

(1) 중장기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중장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근거로 기금의 중기 재정추계를 고려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자금운용의 제약조건인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중장기 자산군의 상대적 운용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금은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자산의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다.

[표 5] 중장기('21 ~ '25년) 자산배분

구 분			자산배분안	허용범위
확정형상품	예 금		0%	0%p
실적형상품	채 권	국내	61%	-21~+3%p
		해외	11%	-2~+11%p
	주 식	국내	4%	0%p
		해외	14%	0%p
	대체투자		10%	-1~+10%p
계			100%	

6. 연간 자산배분

(1) 연간 자산배분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해년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자산배분의 허용가능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별 비중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외투자시 외환 익스포저는 변동성의 감소를 위해 해외채권은 100%, 해외주식은 50%, 해외대체투자는 100% 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범위를 ±10%p로 한다. 단 헤지비율은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대체투자자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상품별로 헤지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연간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변동폭(허용범위)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한다.

[표 6] ‘21년도 연간 자산배분

구 분			자산배분안	허용범위
단기자금	현금성		3%	±3%p
	유동성		0%	+1%p
중장기자금	예 금		0%	+5%p
	채 권	국내	56%	-24～+21%p
		해외	12%	±6%p
	주 식	국내	4%	±2%p
		해외	14%	-7～+5%p
	대체투자		11%	±6%p

7. 기준수익률

(1) 기준수익률의 설정은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준수익률은 자산군 별로 다음과 같다.

[표 7] 자산군별 기준수익률

구 분				기준수익률	제공처
단기자금	현금성			업계평균 MMF 수익률	연기금투자풀 성과평가사
	유동성	확정형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정기예금 6개월 미만 가중평균수익률	한국은행
			6개월 이상～1년 미만	정기예금 6개월～1년 가중평균수익률	한국은행
		실적배당형		KIS 단기 국공채 지수	KIS 채권평가
중장기자금	정기예금, CD			KORIBOR 1년	연합인포맥스
	채권		국내	KIS종합채권지수 1～10년, AA-이상	성과평가기관
			해외	Barclays Global Aggregate	성과평가기관
	주식		국내	KOSPI	한국거래소
			해외	MSCI ACWI	성과평가기관
	대체투자			대체투자지수[1)]	성과평가기관

1) 세부유형 기준수익률을 국내외 대체투자 예상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국내 이자소득형: (국내채권 기대수익률+0.75%)×63%}+{해외 이자소득형: (해외채권 기대수익률+0.75%)×27%}+{국내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기대수익률+1.25%)×7%}+{해외 수익추구형: (해외주식 기대수익률+1.25%)×3%}

(3) 자산군별 세부 기준수익률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수 외에 기금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별도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준수익률은 기금의 자산운용의 방향성 및 원칙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한다.

(5) 기준수익률은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Ⅵ. 위험관리

기금의 위험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험관리기준'에서 다루며 기금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제반 업무활동 및 자산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법규위험 및 운영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1) 시장위험은 주가, 이자율 및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으로서 통계적으로 산출한 값인 Value at Risk(VaR)로 측정할 수 있다.

(2) 신용위험은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으로서 신용등급, 투자한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유동성위험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4) 환위험은 해외투자시 각국통화간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변동함으로서 외화표시거래의 가치나 외화표시 재무제표항목의 가치에 야기되는 재무적 위험을 말한다.

(5) 법규위험이라 함은 법 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자산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6) 운영위험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을 보이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말한다.

인식된 위험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해당 위험량은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한다.

기금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한다.

2.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험의 관리를 위한 조직에는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 실무조직인 위험관리담당이 있다.

(1)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2) 위험관리담당

기금의 위험관리담당은 위험관리 실무조직으로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여 다음 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ㅇ 운용 현황 및 자산 변동 현황
- ㅇ 제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
- ㅇ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신용위험 현황
- ㅇ 기타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Ⅶ. 성과평가 및 보상

기금의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성과평가관리기준'에서 다루며 기금의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평가의 원칙

기금의 운용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 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성과평가의 주기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는 분기·반기·연간으로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준수익률과의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3. 성과평가의 기준

(1) 성과평가의 방법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하며, 단순수익률 외에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도 평가한다. 또한 성과평가는 해당기간의 실현수익률 산출 후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과 비교하여 자산운용 성과 분석을 실시한다.

(2) 기준수익률

자산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해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기준수익률 = $\sum$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은 자산배분안에 따른 투자자산별 비중을 의미함.

[표 8] 자산별 기준수익률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기준수익률</th><th>제공처</th></tr>
<tr><td rowspan="4">단기
자금</td><td colspan="3">현금성</td><td>업계평균
MMF 수익률</td><td>연기금투자풀
성과평가사</td></tr>
<tr><td rowspan="3">유
동
성</td><td rowspan="2">확
정
형</td><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td>정기예금
6개월 미만
가중평균수익률</td><td>한국은행</td></tr>
<tr><td>6개월 이상~
1년 미만</td><td>정기예금 6개월~1년
가중평균수익률</td><td>한국은행</td></tr>
<tr><td colspan="2">실적배당형</td><td>KIS 단기 국공채 지수</td><td>KIS 채권평가</td></tr>
<tr><td rowspan="6">중장기
자금</td><td colspan="3">정기예금, CD</td><td>KORIBOR 1년</td><td>연합인포맥스</td></tr>
<tr><td rowspan="2">채권</td><td colspan="2">국내</td><td>KIS종합채권지수
1~10년, AA-이상</td><td>성과평가기관</td></tr>
<tr><td colspan="2">해외</td><td>Barclays Global Aggregate</td><td>성과평가기관</td></tr>
<tr><td rowspan="2">주식</td><td colspan="2">국내</td><td>KOSPI</td><td>한국거래소</td></tr>
<tr><td colspan="2">해외</td><td>MSCI ACWI</td><td>성과평가기관</td></tr>
<tr><td colspan="3">대체투자</td><td>대체투자지수*</td><td>성과평가기관</td></tr>
</table>

* 각 유형별 기준수익률 실제 투자비중으로 가중평균

4. 보상정책

보상정책은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보상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쟁적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보상정책으로 우수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성과평가 조직 및 보고체계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성과평가를 위한 조직에는 성과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 실무조직인 성과평가담당이 있다.

(1) 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성과평가 전반을 총괄한다.

(2) 성과평가담당

기금의 성과평가담당은 성과평가 실무조직으로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여 다음 사항을 성과평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ㅇ 성과단위별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위험조정수익률
- ㅇ 자산군 및 상품별 성과요인분해 결과
- ㅇ 기타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Ⅷ.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기금운용의 형태는 운용 주체에 따라 내부운용(직접운용)과 외부운용으로 구분한다. 내부운용은 기금 내부인력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운용은 간접 또는 재간접투자방식으로 외부위탁 운용기관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투자방식은 집합투자형태를 말하며, 재간접투자방식은 펀드어브펀드(Fund of Funds)형태를 말한다.

1. 내부운용 정책

(1) 기금의 내부운용은 운용 목적, 운용 자산규모, 보유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형 상품에 운용한다.

(2) 기금은 분산투자 효과 및 수익률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기준에 의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3) 기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을 운용 시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 외부운용 정책

(1) 기금의 외부운용은 외부위탁 운용기관의 전문성과 투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외부운용은 내부운용 인프라 및 자금의 성격, 위험분산효과, 운용 기법 등을 고려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한다.

(3) 외부위탁 운용기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연기금투자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중에서 선정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단, 자산운용기준에 의한 재간접위탁운용사와 기획재정부의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기금투자풀에게 우선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재간접위탁운용사 및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에 대한 운용규모는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4) 외부운용 상품으로는 주식형펀드(국내, 해외), 채권형펀드(국내, 해외), 혼합형펀드, 단기자금펀드 등으로 한다. 외부운용 실적형상품의 위탁기관 선정시 수익률 보장과 같은 이면합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 기금은 외부운용 시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운용자산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한다.

(6) 기금은 위탁 운용기관의 관리를 위해 위탁 운용기관의 관련 법률, 약관 등 위탁투자지침의 준수여부 및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Ⅸ. 의결권 행사

1. 의결권 행사원칙

기금은 투자 원본의 보전과 기금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목적 외에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의결권 행사방법

기금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기금의 기본적 입장, 통일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의 판단기준, 유의사항 등의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Ⅹ.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담당자는(이하 “직원이라 한다”)는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직원은 관계 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자산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ㅇ 직원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물질적 · 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ㅇ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수수료의 할인서비스에 한한다.

ㅇ 직원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ㅇ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Ⅺ. 보고, 공시 및 감사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나 내부 감사부서를 지정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감사를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ㅇ 연간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ㅇ 자산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ㅇ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ㅇ 반기공시 : 반기별 운용현황 및 상품별 운용현황

ㅇ 연간공시 : 자산운용지침, 연간자산운용계획, 연간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ㅇ 수시공시 : 그 밖에 자산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